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2007.11.05.제정	2007.11.14.일부개정	2008.04.16.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19.10.23.일부개정	2020.05.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2.06.24.일부개정	<u>2023.11.13.일부개정</u>	

<미래전략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7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11.5.)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5., 2020.5.1.)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5. 조교 1명

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 2022.6.24.)

1. 교원 평의원은 동명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동명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동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4. 조교 평의원은 동명대학교에 조교로 재직 중인 자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및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3.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교환학생 6개월 이상 파견

⑤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이 임기중 1년 이상의 장기 국외체류를 할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⑥조교 평의원이 임기중 다음의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5.1.)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및 정직이상의 징계처분

제5조(선출 및 위촉) ①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학칙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②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단, 단체협약상의 평의원 추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③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⑤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의 평의원은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⑥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주무부서(교무처 교무팀)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2021.6.1.)

제6조(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7조(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 2022.6.24.)

②평의원 임기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후임자는 동일 구성단위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보선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

③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평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선출방식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궐위 평의원의 잔여 임기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08.4.16.)

②회의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교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선/메시지/E-mail 등을 통하여 평의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신설 2019.10.23.)

제 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의사결정의 중립적 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의결권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7.11.14.)

제10조(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 자료제출, 평의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부서 또는 기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공개) ①대학평의원회는 해당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3.)

제14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6조 (삭제 2007.11.5.)

제17조 (삭제 2007.11.5.)

제18조 (삭제 2007.11.5.)

제19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① 「정관」 제20조의5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구성을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중 2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9.10.23., 2023.11.13.)

② 의장, 부의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의장 또는 부의장 변경시 자동으로 변경 추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5., 2019.10.23., 2023.11.13.)

③ 삭제 (개정 2007.11.5., 2019.10.23., 2023.11.13.)

제20조 (삭제 2007.11.5.)

제5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삭제 2019.10.23.)

제21조 (삭제 2019.10.23.)

제22조 (삭제 2019.10.23.)

제23조 (삭제 2019.10.23.)

제24조 (삭제 2019.10.23.)

제25조 (삭제 2019.10.23.)

제26조 (삭제 2019.10.23.)

제27조 (삭제 2019.10.23.)

제28조 (삭제 2019.10.23.)

제29조 (삭제 2019.10.23.)

제30조 (삭제 2019.10.23.)

제6장 보 칙

제31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2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3.)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최초 위촉되는 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007년 학생회 임기까지로 한다.

2. 이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동명대학교 재직연수는 동명문화학원 재직연수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